

#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77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1. 18.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제안이유

- 2016년 2월 28일자 위탁이 종료되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, 운영을 맡을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운영 대상시설

어린이집명	소재지	보육 정원	보육 교직원	연면적	위탁기간	비고
시립안산보 듬이나눔이	단원구 신길중앙로 17 (신길동)	124	19	979.4m <sup>2</sup>	16.03.01~ 21.02.28	
시립아기별	단원구 신길로 94 507동 1층 (신길동, 휴먼시아5단지)	24	7	114.42m <sup>2</sup>	16.03.01~ 21.02.28	

### 나. 보육아동현황

(2015. 11월 현재)

어린이집명	구분	계	0세	1세	2세	3세	4세	5세	장애아
시립안산보 듬이나눔이	반수	13	2	2	4	2	2	1	-
	현원	106	6	9	26	24	23	18	-
시립아기별	반수	4	0	2	2	0	0	0	-
	현원	21	0	10	11	0	0	0	-

- 2015년 세입·세출예산 규모 : 각각 805,966천원, 259,815천원
- 위탁기간 : 5년 단, 「안산시 영유아보육조례」 제23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 가능(재위탁기간은 3년으로 함)

## 다. 심사결정방법

- 적격성 확인 : 위탁운영신청자의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
- 선정방법 : 안산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거쳐 시장이 결정
- 심사기준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 참조(※ 필요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조정가능)

심 사 항 목	항목별 점수
가. 어린이집 운영계획	40
나.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	35
다.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	10
라. 운영체의 공신력	10
마. 운영체의 재정능력	5
합 계	100

- 심사결정 :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 · 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운영자로 선정 (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 계산)  
※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실시
- 동점자 처리 :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  - 1순위 : 어린이집 운영계획
  - 2순위 :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
  - 3순위 :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
- 결과공개 : 안산시청 홈페이지 결과 공개

## 라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제2항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
- 「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」 제22조(위탁운영)

## 마. 민간위탁의 필요성

- 어린이 보육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·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 복지증진의 역할을 수행함.
- 어린이집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가 운영하여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할 것이며, 또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이 운영이 타당함.

## □ 예산 현황 : 민간위탁예산 없음

## □ 관계법령 발췌서

### ○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1.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
2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

3. 「주택법」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
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